

목포해양대학교 GPS교육혁신본부 운영규정

[시행 2023.8.22.] [목포해양대학교 규정 제894호, 2023.8.22., 일부개정]

제정 2019.04.03.(제730호)
일부개정 2021.02.26.(제818호)
일부개정 2021.05.13.(제830호)
타규정개정 2023.02.27.(제877호)
타규정개정 2023.05.30.(제885호)
일부개정 2023.08.22.(제894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목포해양대학교 학칙」 제6조 따라 설치된 GPS교육혁신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2.27.,2023.5.30.>

제2조(조직) ① GPS교육혁신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, 원격교육지원센터, 교육성과관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.<개정 2021.2.26.,2023.2.27.,2023.5.30.,2023.8.22.>

② 본부에는 본부장과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.<개정 2023.2.27.>

③ 본부장 및 각 센터장은 목포해양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23.2.27.>

④ 본부에는 연구교수, 연구원,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3.2.27.>

⑤ 본부에는 운영위원회와 교육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23.2.27.,2023.8.22.>

제3조(운영위원회) ① 본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 2023.2.27.>

②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부장을 포함하여 교무처장, 입학학생처장, 기획조정처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원격교육지원센터장, 교육성과관리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1.2.26.,2023.2.27.,2023.8.22.>

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부의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<개정 2023.2.27.>

2. 본부의 예산과 결산<개정 2023.2.27.>

3. 본부 소속 센터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<개정 2023.2.27.>

4. 본부 각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<개정 2023.2.27.>

5. 비교과교육과정의 운영 계획 및 환류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5.13.,>

6. 기타 본부 운영과 관련되는 주요 사항 <신설 2021.5.13.><개정 2023.2.27.>

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의결한다.

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 직원 중 한 명을 간사로 둔다.<개정 2023.2.27.>

제4조(교육성과관리위원회) ① 교육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본부장이 된다. <개정 2023.2.27.,2023.8.22.>

② 위원은 본교 소속 교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교육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3.8.22.>

⑤ 교육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3.8.22.>

1. 핵심역량진단, 교육과정 인증 및 교육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
2.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에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 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
4. 교육과정 질 관리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수요자 중심 만족도 평가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및 혁신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교육성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

[제목개정 2023.8.22.]

제5조(교수학습지원센터) 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·학습법 연구 및 개발
2. 교수·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3. 교수·학습 프로그램 성과 분석
4. 교수·학습법 콘텐츠 및 교재 개발
5. 수업컨설팅에 관한 사항
6. 삭제<2021.2.26.>
7. 삭제<2021.2.26.>
8. 교수법, 학습법 영상 제작
9. 삭제<2021.2.26.>
10. 기타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

②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의2(원격교육지원센터) ① 원격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기획
2. 원격교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법 연구, 개발 및 지원
3. 원격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법 연구, 개발 및 지원
4.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및 지원
5. 원격수업(교내·외 원격수업, 공개강좌 등) 콘텐츠 개발 및 운영
6. 그 밖에 원격교수학습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②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2.26.]

제6조(교육성과관리센터) ① 교육성과관리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3.8.22.>

1. 학생 핵심역량 진단 도구 개발 및 측정
2. 수업분석 연구
3. CQI(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:교육과정 질 관리) 분석 연구
4. 교육과정 분석 연구
5. SHIP(Supporting-platform for Heterogeneous-data Information Processing)기반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의 운영
6. 삭제<2021.2.26.>
7. 대학교육 정책방안 연구
8. 비교과 과정 기본 정책 수립
9. 비교과 과정 조정, 편성, 개편 업무
10. 비교과 과정 통합 관리 및 운영
11. 비교과 과정 평가 및 성과분석
12. 기타 기능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교육성과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23.8.22.>

[제목개정 2023.8.22.]

제7조(행정실) 행정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부 운영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<개정 2023.2.27.>
2. 본부 규정 및 본부 내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<개정 2023.2.27.>
3.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
4. 대외업무에 관한 사항

제8조(재정) ① 본부의 재정은 본교의 대학회계 예산과 국가 보조금, 용역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<개정 2023.2.27.>

② 교육자료, 이러닝 강좌 및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9조(회계연도) 본부 회계연도는 본교 대학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.<개정 2023.2.27.>

제10조(운영세칙) 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3.2.27.>

부칙(제730호,2019.4.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 및 지침의 폐지)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및 대학혁신지원센터 운영지침은 폐지한다.

부칙(제818호,2021.2.26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830호,2021.5.13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877호,2023.2.27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885호,2023.5.30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894호,2023.8.22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